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개정]**

2025. 4.

교 육 부
[인재정책실]

참고

라이즈 지원전략 신규 대조표

연번(페이지)	내용																
2쪽, 21쪽	(현재) ○ (지원대상) - ③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																
	(수정 후) ○ (지원대상) - ③기업 등 또한 ①의 학교와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 참여 및 지자체 대응자금을 활용해 사업비 지원 가능																
21쪽	(현재)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 <table><tr><td rowspan="3">재정진단 등 기준</td><td>○</td><td>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td><td></td></tr><tr><td>X</td><td rowspan="2">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td><td rowspan="2">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td></tr><tr><td>KAIST, 폴리텍, 출연연 등</td></tr><tr><td></td><td>X</td><td>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td><td>3) RISE 사업 참여 가능</td></tr><tr><td></td><td>기업 등</td><td></td><td></td></tr></table>	재정진단 등 기준	○	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KAIST, 폴리텍, 출연연 등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3) RISE 사업 참여 가능		기업 등		
	재정진단 등 기준		○	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KAIST, 폴리텍, 출연연 등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3) RISE 사업 참여 가능														
	기업 등																
	(수정 후)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 <table><tr><td rowspan="3">재정진단 등 기준</td><td>○</td><td>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td><td></td></tr><tr><td>X</td><td rowspan="2">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td><td rowspan="2">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td></tr><tr><td>KAIST, 폴리텍, 출연연 등</td></tr><tr><td></td><td>X</td><td>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td><td>3)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지자체 대응자금)</td></tr><tr><td></td><td>기업 등</td><td></td><td></td></tr></table>	재정진단 등 기준	○	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KAIST, 폴리텍, 출연연 등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3)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지자체 대응자금)		기업 등		
재정진단 등 기준	○		1)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2)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KAIST, 폴리텍, 출연연 등																
	X	기준 준수 대학과 협의체 구성 + 지역RISE위원회 결정	3) 사업비 직접 지원 가능 (지자체 대응자금)														
	기업 등																
23쪽	그림 교체 (1쪽의 '거버넌스 구조도' 그림과 통일)																
3쪽, 4쪽, 29쪽, 30~32쪽	'핵심'성과지표 → '공통'성과지표로 일괄 교체																
34쪽	[붙임] 공통성과지표(①~③) 정의 및 산출식 추가																

목 차

I . RISE 지원전략 개요	1
II . RISE 비전과 목표	4
III . RISE 지원전략 주요 내용	5
1) 추진체계 구축 · 운영	5
2) 계획 수립	14
3) 사업 운영	21
4)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29
IV . 향후 추진일정(안)	33
[붙임] 공통성과지표(①~③) 정의 및 산출식	34

I. RISE 지원전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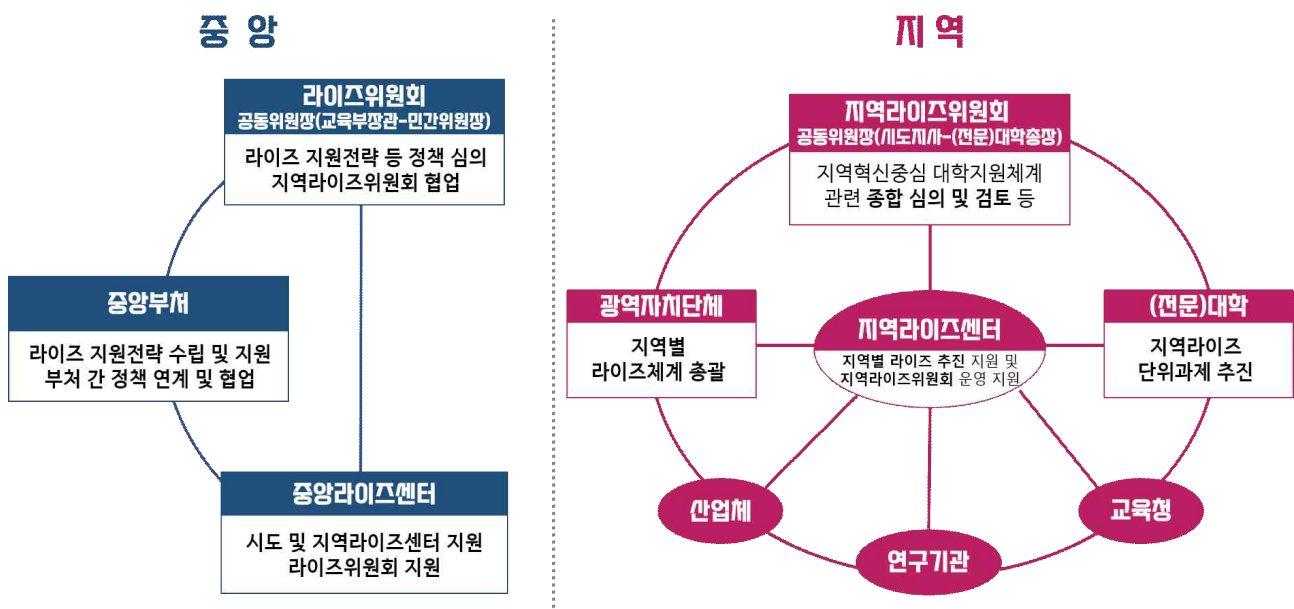
□ 구성

- ①중앙 및 지역 단위 RISE 추진체계 구축·운영, ②지역별 RISE 계획 수립, ③사업 운영, ④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의 4개 영역으로 구성

□ 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원전략

- (지역)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 ※ 「고등교육법」 개정 및 「RISE훈령」 제정으로 지자체장-지역(전문)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체제, 지역대학 총장·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 마련
-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 평가결과, 성과관리 등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중앙)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대교협·전문대교협·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RISE위원회를 구성·운영

<참고 :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 (협력체계) ▲지역 주도 사업 기획·설계 ▲지역라이즈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역 주체 간 수평적인 협의 체계 구축·운영 등에 중점

□ 계획 수립 지원전략

- (종류) 수립 주체별로 지역이 수립하는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과, 교육부 수립 RISE 지원전략(5개년)으로 구분
 - ①기본계획은 지역RISE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중점사항) 각 시도는 대학과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
 -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교육부 포함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의대 교육혁신 지원,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계획 및 '25년 일몰되는 사업들의 지역 협업방안을 각 지역별 계획에 반영

□ 사업운영 지원전략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③기업 등 또한 ①의 학교와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 참여 및 지자체 대응자금을 활용해 사업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 (예산 지원) 「보조금법」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지원전략

- **(성과관리 목적)** RISE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역 간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추진 방향)** 지역 ·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부는 공통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지역은 자율성과지표를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중앙 및 지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학지원 추진
- **(성과관리 구조)**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지자체→대학, 매년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단위과제별 목표와,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하고 환류 실시
 - 교육부는 연차점검을 통해 지역별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중간(2년차) 및 종합평가(5년차)를 통해 지역별 공통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 실시
- **(성과지표 구성)** 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
 -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지표로서 공통성과지표를 제시하되, 중간·종합평가에서만 평가

※ ④~⑥ 공통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

공통성과지표 구성(안)	
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IMPACT 평가)

II. RISE 비전과 목표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핵심 인적·물적자원 집약체인 대학이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있는 지역대학 육성

주요 내용

①추진체계 구축·운영

- ▶ 지역 내 수평적 거버넌스 및 자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 ▶ 중앙은 RISE를 플랫폼으로 한 범부처 협업체계 조성

②계획 수립

- ▶ 지역발전전략 연계, 대학 강점·특성화분야 적극 활용
- ▶ 범부처 연계, 중앙·지역 협업, 초광역 과제

③사업 운영

- ▶ 지자체 20%+α 매칭
- ▶ 칸막이 없는 대학 예산 집행

④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 ▶ 지역별 자체평가 중심 성과관리
- ▶ 교육부는 공통성과지표 관리

정책 기반

지원중심으로 교육부 역할 대전환

규제개혁 대학 자율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편

재정개혁 혁신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대학 지원

구조개혁 지역 사회를 위한 대학 역할 전환 지원

범정부적 지역주도 정책 강화

지역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본격화

※ 일자리, 지역재생, 문화, 산업, R&D 등 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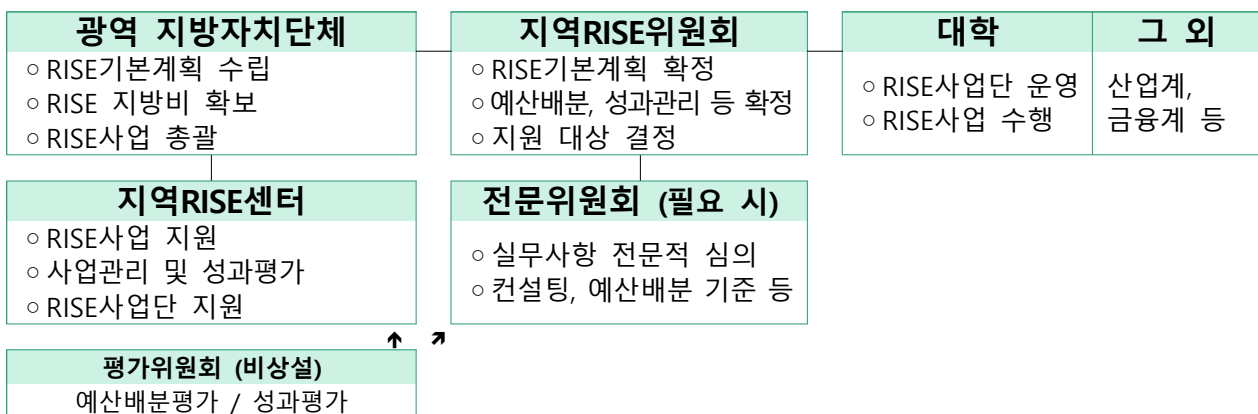
III. RISE 지원전략 주요 내용

1 추진 체계 구축·운영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훈령)」(안) 기반

1 지역 및 대학의 추진체계

◆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을 이끄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 (지역RISE위원회) 지역의 RISE 추진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각 지역은 훈령 제정 및 「고등교육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라이즈위원회 조속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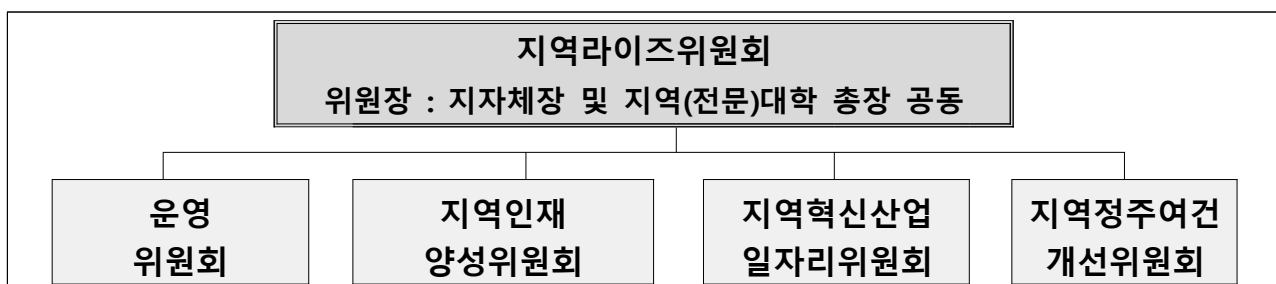
- <구성>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장과 지역(전문)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계 위원을 1/2이상 위촉

※ 지역 내 대학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교육계 위원을 위촉

- <기능>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평가 결과, 성과관리 등 지역 내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

<지역RISE위원회 구성 예시>



- **(지자체)** 지자체 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통합·재배치하여 RISE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운영
 - 시도별 조직·정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총괄 부서는 최소 과 단위 이상 및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총괄부서와 동일한 실·국으로 편제*할 것을 권장
 - * 예를 들어, 산업부 사업을 시도에서 RISE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 부서와 RISE전담부서 간의 정보공유, 성과지표 공유 필요
 - RISE 계획 이행을 위한 총괄담당자(팀)를 지정하며, 산학협력, 인재 양성, 평생교육 등 시·도 대학지원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로 배정
 - ※ 필요 시 담당자를 전담관 또는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 지원
 - 교육개혁지원관 배치 시도는, RISE 추진 관련 자문, 시도-교육부 간 소통, 시도-대학 간 소통 등에 지원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
 - ※ '25년 전국시행에 맞춰, 교육개혁지원관의 전 지역 배치 추진 검토(현재 7개 시범지역)
- **(지역RISE센터)** 지역 대학 및 산업체, 기업과의 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또는 신설한 비영리법인
 - ※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소통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과 RISE 계획을 연계하고, 대학 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
 - 지역의 RISE 계획 수립 지원, 대학의 RISE 사업 수행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성과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지역RISE센터 조직 구성 예시>



- ※ 필요 시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협약을 통한 사업관리 협업 가능
- 지역 내 지역·대학혁신 관련 지원조직(지역상의·(전문)대교협·평생교육원·지역인적자원위 등)과 협의체 운영 시 적극 참여·연계 권장
 - ※ 필요 시 지역 내 대학, 혁신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통해 협업체계 내실화

- **(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비전·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RISE 추진**
 - 대학 내에서의 **분절적 사업운영** 방지를 위해, 학교가 수주하는 단위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RISE 사업단***을 구성
 - * 예) 사업단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학 본부에 두고, 교무위원이 사업단장 겸임
 - ※ 글로컬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대학 혁신 선도 역할을 수행하므로, 글로컬대학과 RISE사업이 통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구성 (예: 글로컬대학사업 단장이 RISE사업단장 겸임/글로컬대학사업단 하위 조직으로 RISE 사업팀 구성 등)

2 중앙 단위 추진체계

◆ 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포함 중앙부처·중앙라이즈센터·지방시대委·대교협·전문대교협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 조정·지원

- **(RISE위원회) 중앙단위 RISE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구성> 대학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교육계·산업계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기재부·과기정통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1인의 공동위원장 구조
 - <기능> RISE 지원전략, 규제 개선, 성과관리, 예산배분, 컨설팅 등 전국에 적용될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 라이즈위원회 심의사항의 실무 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 운영 가능
- **(중앙RISE센터) RISE의 전 지역 안착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중앙단위 각종 성과관리·모니터링·조사·연구·데이터관리 등을 수행**
 - <지역지원> 지자체 및 지역RISE센터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워크숍, 지역별(권역별) 전담인력 배치 등 추진
 - <중앙단위> 교육부의 지자체 대상 성과평가 위탁 운영, 전국 단위 관리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산학연협력 EXPO 등 성과확산
- **(중앙부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RISE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정책 연계 지원**

<참고 : RISE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

<범부처 사업의 RISE 연계 유형>

- ①유형 : 각 지역은 '범부처 정책메뉴판'에서 제시한 부처별 사업 중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활용하여, RISE 계획의 단위과제를 기획
- ②유형 : 1유형+지역RISE센터에서 범부처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협업
- ③유형 : 2유형 + 범부처 사업의 자치단체 보조 전환 및 지역자율 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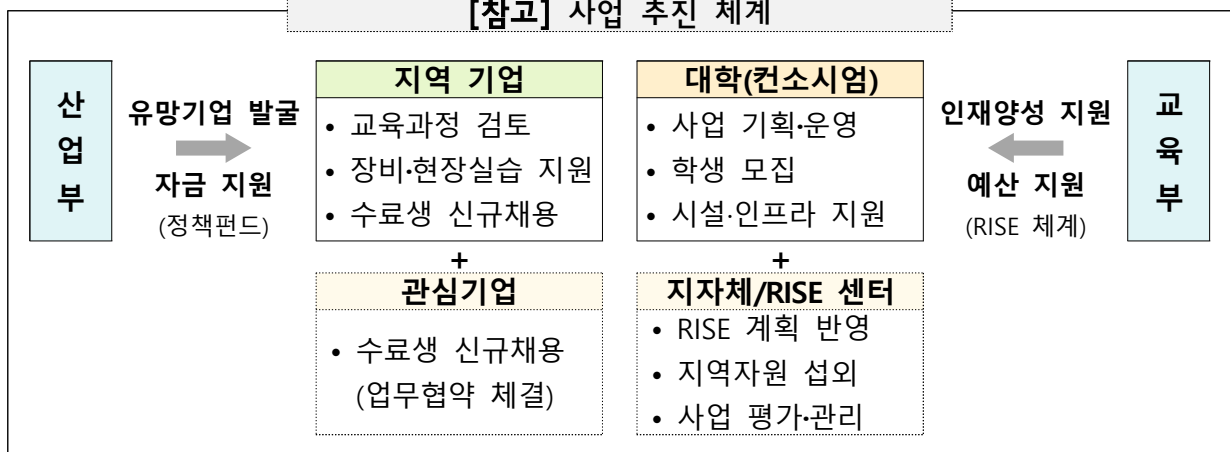
※ 중앙부처 인재양성사업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계적 이관 협의

1 산업+교육 지역산업활력펀드 연계 맞춤형 형 인재양성(CUBE*) : 연계 1유형

* Customized, University-Based Education and Training

- ▶ (필요성) 자금 및 인력수급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재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 (내용) 산업부는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펀드(1,100억)를 공급하고, 대학은 기업과 협의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 지역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의 연구설비와 전문인력도 교육에 활용해, 수료 이후 즉시 채용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양성
- ▶ (추진체계) 지자체(지역RISE센터)가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한 RISE 계획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 의사가 있는 대학-기업 컨소시엄 선정·성과관리 등 진행

[참고]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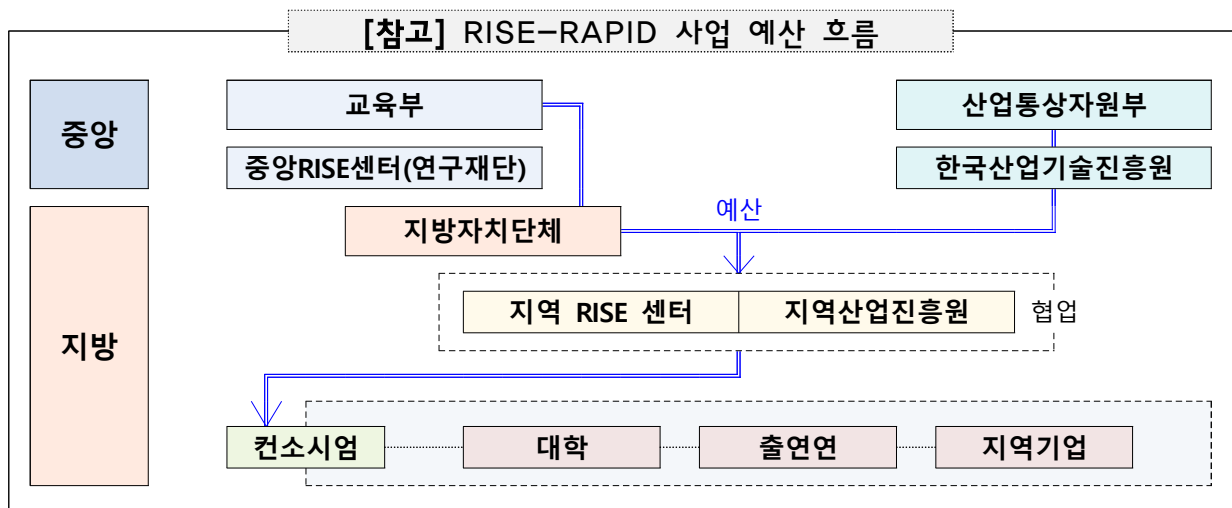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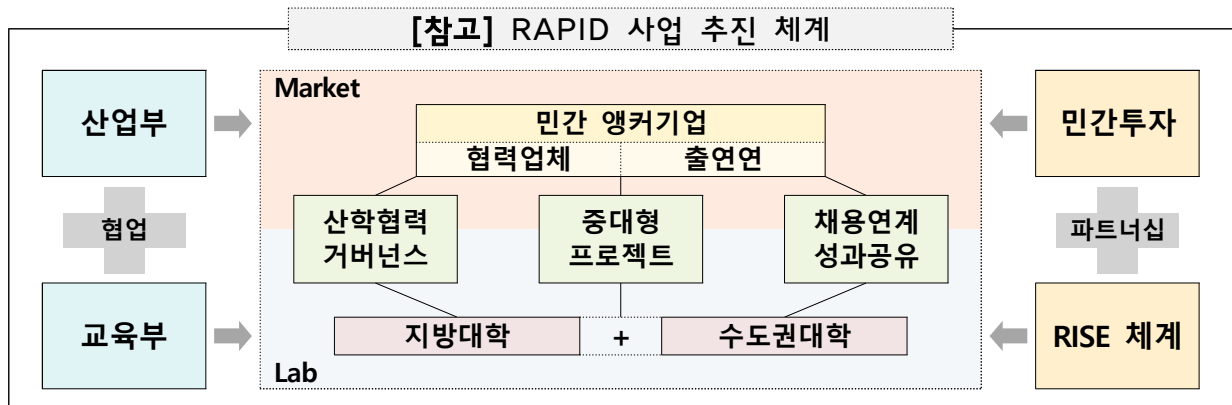
2 산업+교육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공동개발(RAPID*) : 연계 2유형**

* Regional Anchorcompany-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

**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공동 관리(예산집행체계 연계 추진)

- ▶ (필요성)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의 혁신주체인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제고 및 대학-지역기업 간 공동 R&D를 증진할 필요
- ▶ (내용)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 수요를 발굴
 - 지역 대학·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중대형 기술개발(예: 항공기 관련 중소형 엔진)을 추진

▶ (추진체계)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완제품(시스템) 단위 R&D를 RISE 체계 내 수행



③ **과기+교육** 학연 플랫폼 중심의 지역혁신기관 벽허물기 : 연계 1유형

- ▶ (필요성) 지역 대학과 출연연은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이나, 자발적 협력 유인이 부족하여 학·연 공동 시너지 창출 저조
- ▶ (내용) 지역대학과 출연연 주도로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지원
 - 권역별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단이 중점 지역혁신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인력양성, 신기술 육성, 기술사업화 활동을 추진
 - ‘대학-출연연 간 벽허물기’를 통해 개방형 인력교류 등 대학과 출연연 간 기관 차원의 협력 확대, 학·연협력플랫폼의 RISE 연계 등 협업 강화 추진
 - 대학·출연연 등 혁신 주체가 협력하여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국가 연구소(NRL 2.0)로 육성
- ▶ (추진체계) 지자체(지역RISE센터)와 협력하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의 RISE 연계를 추진하고,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NRL2.0등 부처간 협업 강화 추진

4 중기+교육 지역주력산업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연계 : 연계 1유형

- ▶ (필요성) 레전드 50+의 다양한 기업지원 수단(자금, 제조혁신, 판로 등)과 RISE의 인력양성 체계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부터 기업성장까지 연계 지원

※ 레전드(Region+end) 50+ 프로젝트 : 여러 기업지원 수단(7개 사업)을 연계한 프로젝트 하나로 지역기업 지원을 끝내어, 우리 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도록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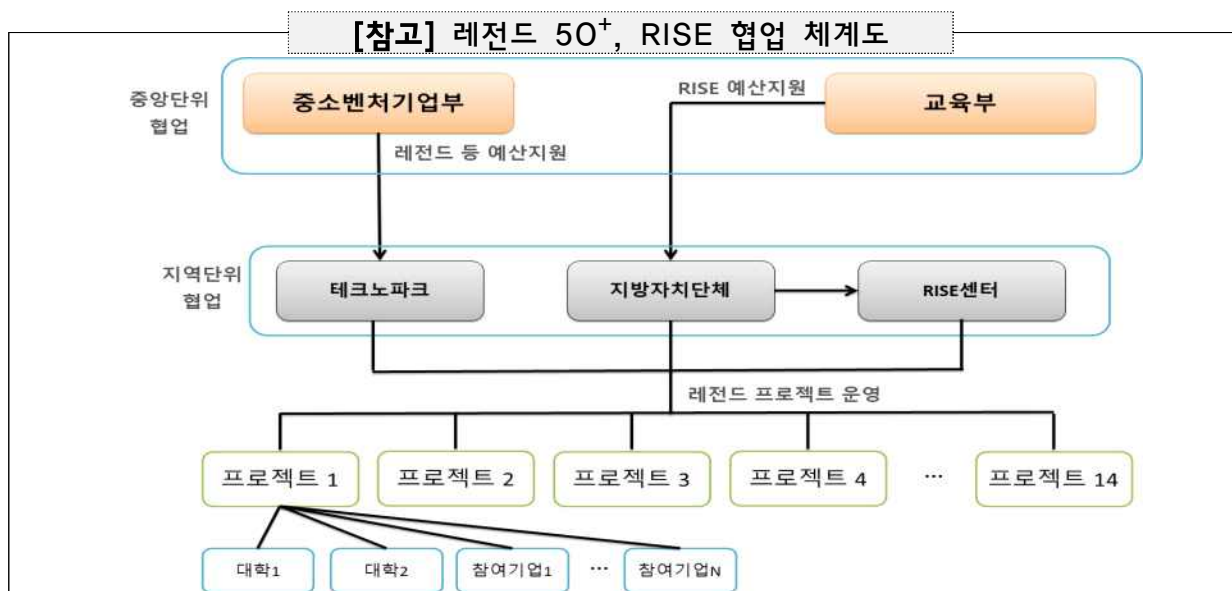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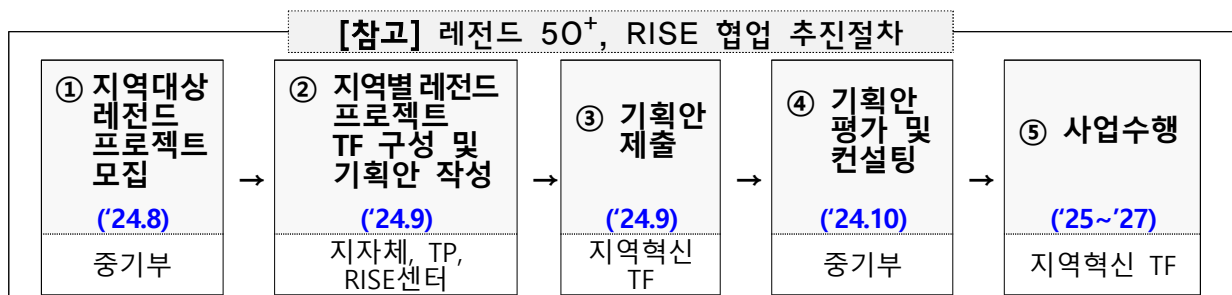
<레전드 50+ 연계 사업 분류 및 '24년 예산 (단위 : 원)>

분야	사업명	'24 예산	분야	사업명	'24 예산
컨설팅	중소기업혁신바우처	140억	수출	수출바우처	100억
창업·성장	창업중심대학	100억	사업화	지역주력산업기업지원	110억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330억		지역혁신생태계조성	10억
정책자금	중진기금 정책자금	2,000억	계		2,790억

▶ (내용)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 및 기업육성 추진

- [중기부] 레전드 50+ 2.0 사업에 지자체별 TP-RISE센터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서 레전드 프로젝트 기획시 인재양성+기업지원을 반드시 연계하여 제안
- [교육부] 중기부에서 발굴한 지역주력산업에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RISE체계내에서 운영하도록 RISE센터와 TP간 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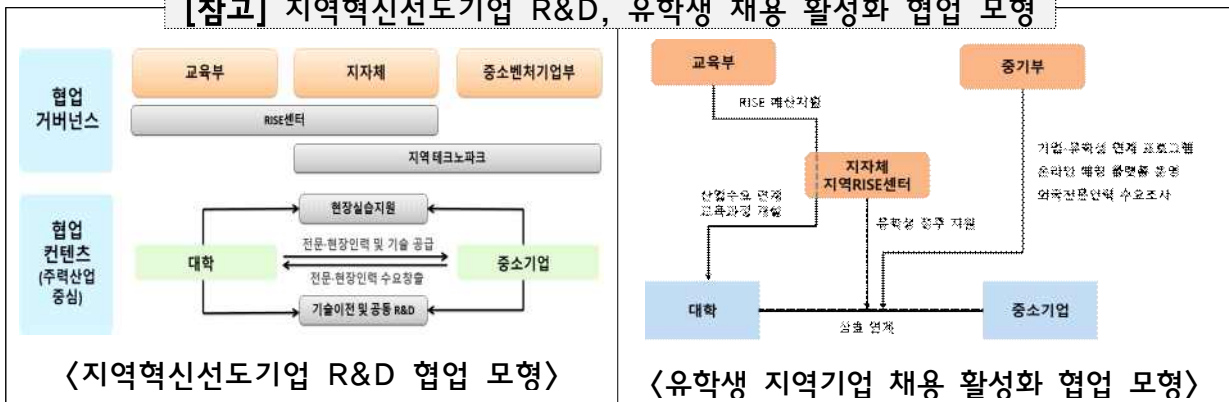
▶ (추진체계) 중기+교육부 공동 총괄하에 지역 주도의 '레전드 50+ 2.0 프로젝트' 수립·실행



⑤ **중기+교육** 지역혁신선도기업 R&D 협업 : 연계 1유형

- ▶ (필요성)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RISE 체계와 협업하여 **지·산·학·연 협력생태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
 - * 그간 R&D는 개별 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중소기업 대상 R&D**는 동 사업이 유일
- ▶ (내용)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대학, 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R&D를 수행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신설(‘25~)
 - * 사업 유형 : ① 컨소시엄형(지자체+중소기업+대학, RISE 연계) ② 일반기업형(단일 기업 단위)
- [중기부] 컨소시엄형 과제 기획시 대학 참여가 필수이며, RISE 참여 대학 등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이전·공동 R&D, 현장실습 등 수행
- [교육부] RISE 참여 대학이 관내 선도기업과 공동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RISE센터 등이 지역 과제 공모시 관련 내용을 포함
- ▶ (추진체계) 지역별 (地)지자체-(産)중소기업-(學)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發 혁신’과 ‘선도중소기업發 혁신’ 간 시너지 창출

[참고] 지역혁신선도기업 R&D, 유학생 채용 활성화 협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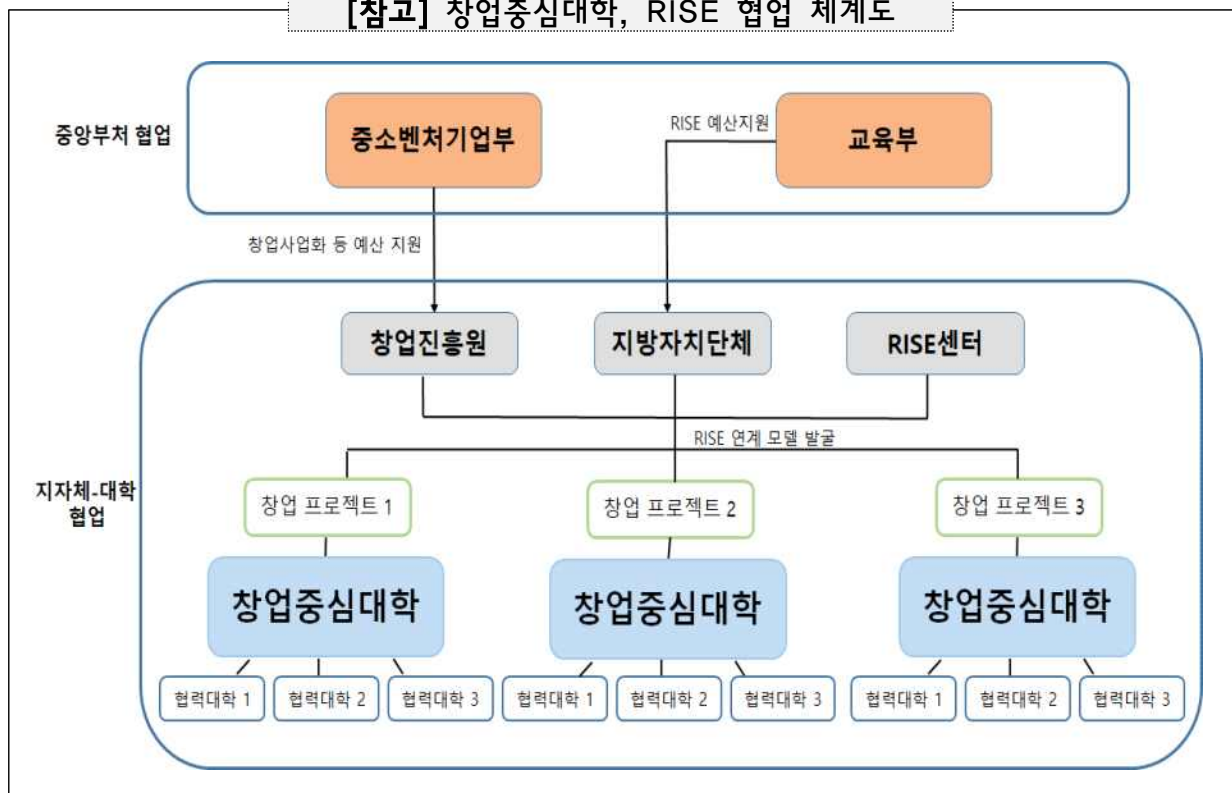
⑥ **중기+교육**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 활성화 : 연계 1유형

- ▶ (필요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취업수요와 지역기업의 구인 수요는 증가하나, 구인·구직 정보 부족, 수요·공급 미스매칭 등이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걸림돌
- ▶ (내용) 대학에서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유학생의 역량 강화 등을 RISE 중심의 협업 과제로 추진
 - [중기부] 유학생 온라인 매칭 플랫폼 개설(‘24.하),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유학생 연계 프로그램 신설(‘25.), 수요기반 외국인 유치활동 지원
 - [교육부] 지역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정을 계약학과·주문식교육과정 등 산학협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기업과 취업 연계성 강화
- ▶ (추진체계) 교육부-중기부-지역 연계를 통해 기업-대학 간 유학생 인력의 수요-공급 매칭, 산업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 정주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연계 지원**

7 **중기+교육** 지역대학 중심 창업지원 : 연계 1유형

- ▶ (필요성) 대학은 기술·인력·장비 등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보유한 혁신 주체이나, 대학의 지역 창업 거점으로서의 역할 미흡
- ▶ (내용) 교육부·중기부의 창업지원 연계를 통해 대학 중심 창업지원 추진체계 마련
 - 지자체(지역 RISE센터)를 중심으로 중기부·교육부가 지자체별 상황, 대학의 강점 등을 고려한 RISE 연계 모델 발굴 지원
 - [교육부] 대학 내 창업지원(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교육 등)과 [중기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사업화 자금, 기술개발, 인력 등)을 연계한 창업지원체계 마련
 - [중기부] 창업중심대학에 지역별 RISE 연계 프로그램 도입하여 지역 내 타 대학의 RISE 과제와 중심대의 창업지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사업화 지원(자금, 역량 강화), 투자유치 지원, 창업 경진대회, 실험실 창업 지원, 네트워킹 등
- [교육부] 지자체(지역 RISE 센터)에서 프로젝트 기획 시 지자체별 상황, 대학의 강점을 고려하여 대학창업 활성화, 지역 스타트업 육성 관련 창업중심대학 연계 과제 포함
- ▶ (추진체계) 중기부-교육부-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등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창업지원 모델 마련 추진

[참고] 창업중심대학, RISE 협업 체계도



8 고용+교육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간 연계 강화 : 연계 1유형

▶ (필요성) 지역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정주의 선순환 구축

- 산업인력 양성-취업-재직자 교육 지원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 재직자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신장, 지역정주 지원 필요
- 지역 내 특정 유망·전략산업분야와 뿌리산업 간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산업계의 실제 인력수요를 균형있고 정밀하게 조망할 필요

▶ (내용) ①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간 연계 강화, ②지역 내 거버넌스 연계

- 각 지자체별로 ①RISE와 고용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간 계획 수립부터 실제 운영까지 연계하여, 산업인력 양성-취업 및 재직자 교육 지원 간 연결고리 구축

- 지자체는 RISE 계획을 통해 지역 대학의 지역산업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고용부는 지역 대상 사업*을 통해 취업 이후 정주까지 지원

* 도약 장려금 지급(지역기업 대상), 임금 보조(근로자 대상), 주거·훈련비 지원 등

- 아울러, RISE 참여자 데이터와 고용보험DB 간 연계를 통해 산업 인력의 수요·공급 간극 해소 및 원활한 RISE 성과관리의 기반 마련

※ 예) 지역 내 RISE 참여자에 대한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대학 졸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파악하는 등 지역RISE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개선 방향 등 모색

- ②지역 내 RISE 거버넌스(지역RISE위원회)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연계

- 지역인자위가 수립하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상 훈련 필요 분야 정보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RISE 계획의 수립·보완 가능

※ 예) OO지역 특화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지능형로봇 분야 지정(지역인자위) → RISE 계획 수립 시 특화산업 분야 관련 프로젝트·과제 설계 (지자체·지역RISE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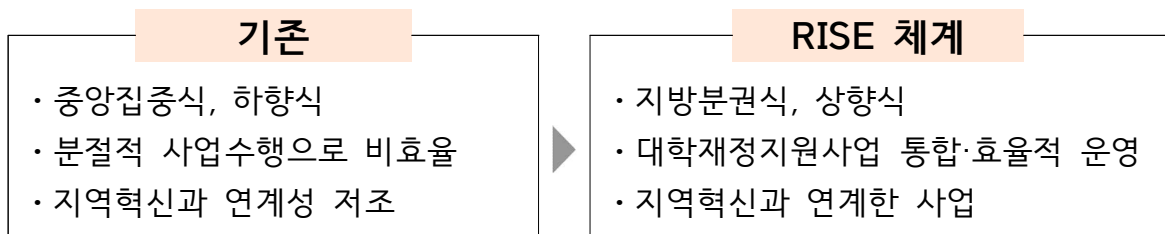
- 지역RISE 운영·발전을 위한 각종 협의체(지역RISE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 구성 시, 지역인자위 관계자 풀을 활용하는 등 산업계와의 직접 연계 강화

▶ (추진체계) 지역RISE위원회-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회 운영 등으로 사업 간 연계분야 발굴 등 향후 발전방향 논의

2 계획 수립

1 지역별 계획의 종류

- 각 지역별 RISE 관련 계획은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 포함)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①RISE 기본계획은 지역발전전략, 지역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
 - ※ 동 계획은 RISE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연계한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제안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 중점사항

- (원칙) 각 시도는 대학과의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종전 중앙집중식·하향식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의 상황·발전전략·정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한 과제 마련
 - 각 지역의 국·공·사립, 일반대·전문대 등 설립 유형과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대학의 규모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
 - 중·장기 계획의 취지를 고려, 계획의 중간 변경은 신중해야 하나 환경 변화 등 발생 시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 각 시도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

- (범부처 등 연계)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삼아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책무성 범위 확대
 - ※ RISE 지방비 의무매칭(국비 대비 20%) 산정 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매칭비 포함
- (중앙·지역 협업) ①글로벌대학, ②의대 교육혁신, ③늘봄 프로그램 개발, ④산학연협력 분야 '25년 RISE 이관사업(8개) 관련 사항 반영
 - 동 사항들의 추진에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발전전략, 전국적 동시 시행 필요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여 RISE 체계에서 수행

<중앙·지역 협업영역 과제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사항
글로벌대학	▶ 지역 내에서 혁신을 이끄는 우수모델 제시 및 전파
의대	▶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선발, 교육과정 개선 등
늘봄	▶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강사 연수 등
8개 이관사업	▶ 지산학연 협력 분야 사업들로 '25년 이행기를 거쳐 '26년 통합 예정

- ※ 의대 교육혁신지원, 늘봄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별도 안내
- ①각 지역별 라이즈 체계에서 글로벌대학의 혁신 전파 역할·방향,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상 시·도의 지원사항 등을 서술
- ②의대 교육혁신지원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 마련
 - 계획 우수성,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인센티브 부여
- ③지역 협력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지자체와 대학·교육청 간 협력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진행
 -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의 질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감소를 위해 전 시도의 계획에 반영을 권장하고,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
- ④'25년은 사업체계에 지역RISE센터를 포함하고, 지역RISE센터는 각 지역별 예산집행·성과관리 수행, 중앙RISE센터는 중앙단위의 예산집행·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 '26년 RISE 완전 통합
 - ※ 사업수행 관련 세부사항은 8개 사업별 '25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며, '26년 이후에도 RISE체계에서 지역자율영역 과제와 연계하여 당초 계획기간까지 지원

<8개 내역사업의 RISE 시행 이후 사업체계(안)>

'25년 사업 체계	'26년~
▶ 재원 형태 : 출연금 ▶ 사업 관리 체계 <pre> 교육부 ↓ 연구재단 등 사업 전담기관 ↓ 지역RISE센터 ↓ 지역대학 </pre> 협약 공동 협약 - 예산은 전담기관 및 지역RISE센터를 거쳐 지역 내 사업참여대학으로 교부	▶ 재원 형태 :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 사업 관리 체계 <pre> 교육부 ↓ 지자체 ↓ 지역RISE센터 ← 지원 중양RISE센터 ↓ 지역대학 </pre> - 중양RISE센터에서 사업 지원기능 수행 - 예산 집행 시 기존 전담기관 미경유
▶ 공통적용사항 : 지역별 RISE 5개년 계획에 통합추진사업의 주요 내용* 명시 * 지역별 지원대학, 사업 기간, 예산 규모, 사업 내용 등	

< 지역 RISE 계획 수정방향>

<현행 목차>	<변경 목차(안)>
1. 지역현황 및 진단 2. RISE 비전 및 목표 3. 프로젝트 세부계획 - 지역이 자율로 구성하는 사업계획 4. 재정투자 계획 5. 성과관리 계획	I 장. 가칭 지역자율영역 (좌동) II 장. 가칭 중앙·지역 협업영역(신설) -예①) '글로벌대학'의 지역 내 혁신 전파 방향, 시도의 글로벌대학 지원사항 등 -예②)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지역 내 참여 대학, 해당 대학의 수행 내용, 지원 예산 등 명시

- **(초광역)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타 지역 대학·기업·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 권장
 - 초광역 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가능 (예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 **(기존 사업 통합 방향)** RISE로 통합되는 5대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은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되나,
 -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필요가 큰 사업 내용의 경우, 지역별 RISE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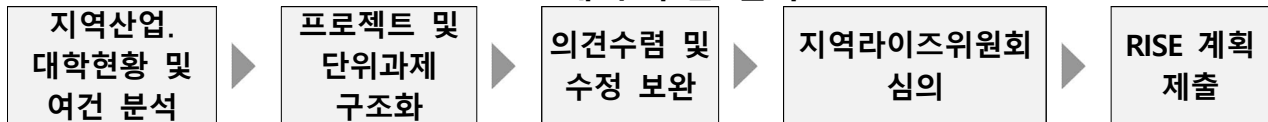
예시

- 운영 예정기간이 1년 남아있던 RIS 초광역플랫폼 A의 공유대학 사업은 RISE 체계에서도 최소 1년은 유지하고, 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연장 가능

※ 기 안내된 통합사업 외 향후 RISE 추가 통합사업이 있는 경우 RISE계획 변경 가능

3 계획 수립 절차

<RISE 계획 수립 절차>



① 지역산업 · 대학현황 및 여건 분석

- 지역발전전략 검토, 지역산업 및 지역주민 등의 실수요 조사·분석
 - ※ 지역주력산업 및 미래핵심 산업, 기업 필요 인력, 역량 등 종합분석 검토 필요
- 기존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전문)대학성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지역 내 대학의 강점 및 특성화 사항을 분석
 - ※ 대학으로부터 자료 제출, RISE센터 등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 타 지역 및 타부처 연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조사

②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구조화

- RISE 추진 비전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를 구조화하고, 시도별 RISE 계획 초안을 마련
 - ※ 기획단계부터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 의견수렴으로 수평적 관계 유지

③ 의견수렴 및 수정 보완

- 시도 RISE 계획 초안에 대해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컨설팅 추진을 통해 시도 RISE 계획 수정 보완

④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

- 지역라이즈위원회*를 통한 RISE 계획 심의 및 조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제·개정 전이라도 각 지역은 동 규정(안)에 따른 지역라이즈위원회 조기 구성을 권고하나, 「지방대 육성법」 제19조 또는 제21조의 협의회(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도 인정

⑤ 지역 RISE 계획 제출

-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시도 RISE계획 제출

④ 프로젝트 및 과제 구성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RISE 기본계획의 비전·목표들이 모여 RISE의 전체적인 성과목표와 비전을 구성

<4대 성과목표(예시)>

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③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④ 지역현안 해결

- 각 지역은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4개 내외) 및 프로젝트별 단위과제를 주도적으로 구성

※ 프로젝트 명칭·개수, 프로젝트 내 단위과제 개수는 지역에서 자유롭게 조정 가능

<시도별 RISE 계획 수립(예시)>



<참고 : RISE 체계에서 전문대학의 역할과 참여방안>

① 전문대학의 특성

- 전문대학은 단기 학제, 취업 중심 교육과정으로 **실무기술인재 양성, 지역의 평생직업 교육거점 등 고유의 강점**을 가진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기능
- ※ 전문대졸 인력은 지역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중소기업 인력의 약 72% 차지('23.)

※ 전문대-일반대 상생모델(예시)

- 고유의 특성으로 **전문대와 일반대가 역할을 분담하는 컨소시엄**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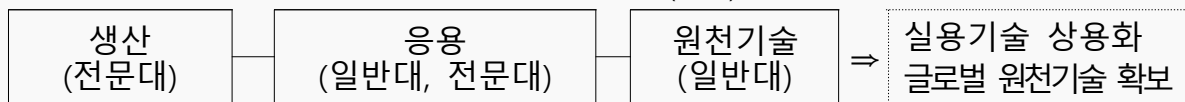
Ⅱ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에 따른 역할분담(예시) 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기본원리 발견	기술 개념과 적용분야 확립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	연구실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유사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유사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	실제환경에서의 시제품 데모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상용제품 생산
대학원영역(기초연구) 1~4단계				일반대학 영역(응용기술) 4~7단계			전문대학 영역(실용기술) 6~9단계	



Ⅱ 전문대-일반대 컨소시엄(예시) Ⅱ

<기업>



② RISE 성과목표별 전문대학의 역할 개요

RISE 성과목표(예시)	전문대학의 역할 개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맞는 실습교육 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 '지역사회-전문대·일반대-산업체·연구소' 등 지역 내 지산학연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가교기관
직업·평생교육 혁신	▶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설 교육기관·학원 등과는 차별화 되는 평생·직업교육 시행
지역현안 해결	▶ 생활밀착형 지역현안문제 의 지속 발굴 과 해결 프로그램 운영

③ RISE 성과목표별 단위과제 운영(예시)

-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바이오·헬스케어 특화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
 - (목표) 바이오·헬스, 의료IT 특화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화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전문대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예시) ①산업체 장기현장실습학기제 등 교육과정 운영→②대학 ICC 중심 산업체 맞춤형 인력 공급체계 및 창업생태계 구축→③지자체의 취업생 정주지원
-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지역 R&D 연구보조 전문인력 육성
 - (목표) 기업의 R&D 연구 전문인력 외 R&D 보조인력을 집중 육성
 - (예시) ①PBL 기반 기초·전문역량 강화→②지역산업체와 전문대학 간의 MOU를 통한 장기Co-op 프로그램 지원→③기업 R&D 보조인력 채용
- (직업·평생교육 혁신) 디지털 융합 평생교육 직업훈련
 - (목표) 중장년층에 대한 재교육으로 취창업 연계 직무전환 지원
 - (예시) ①학내 창업공간에서의 중장년층 DX 교육과정 운영→②전문자격 취득 및 창업 실전 교육→③맞춤형 취업 지원 및 창업인큐베이팅→④장년층 재취업 지원금 등 지자체 정주지원 연계
- (지역현안 해결①)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상호문화도시' 조성
 - (목표) 상호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역량과 가족 전체의 적응 지원
 - (예시) ①지역 내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언어교육, 박물관·문화센터 견학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②전문대 교원의 상호문화가정의 학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워크숍' 등
- (지역현안 해결②) 지역특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목표) 지역발전 프로젝트(외식산업)와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 (예시) ①지역 농산물 이해 및 실습 및 관련 이론→②지역 농가 협력, 외식산업 축제 기획, 창업 인큐베이팅→③지역 외식산업체 장기Co-op→④지역 창업 및 정주

④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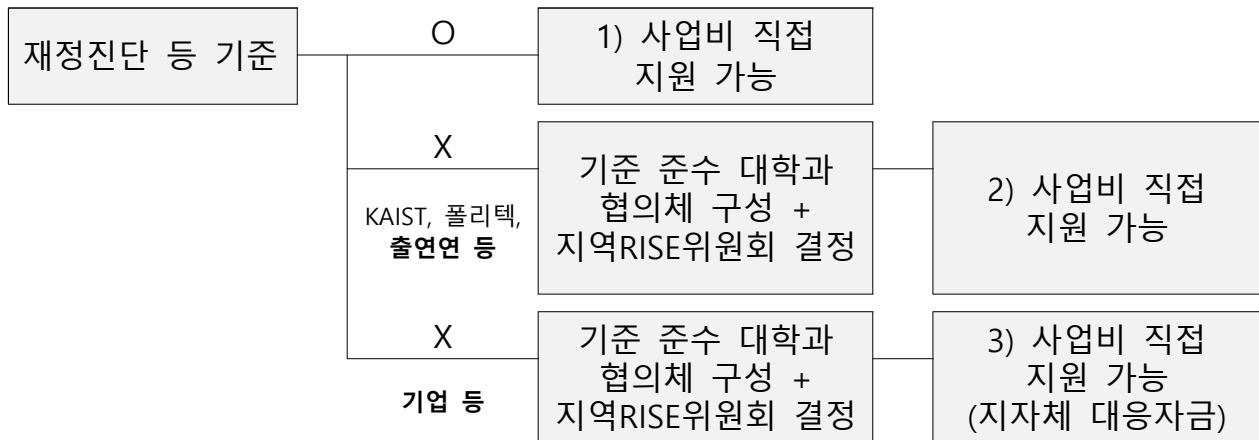
- RISE 체계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역정주인력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이어져 지역과 산업, 대학의 동반성장에 기여

3 사업 운영

1 개요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지역별 대학 선정·공모는 사전에 수행 가능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



-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23.3.)의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은 RISE를 포함

예시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폴리텍)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RISE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지원 대상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RISE 사업비(국비+지방비) 지원 가능

- ③기업 등 또한 ①의 학교와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 참여 및 지자체 대응자금을 활용해 사업비 지원 가능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대학 본교와 캠퍼스가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할 경우, 캠퍼스 소재지 시도가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교 소재지 시도 또한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예시
○ “가 대학 본교”는 “A시”에 소재하고, “가 대학 캠퍼스”는 “B도”에 소재할 경우 - “B도”에서 “가 대학 B도에 소재한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A시”가 본교와 연계한 캠퍼스 지원 필요성이 있어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B도에 소재한 캠퍼스” 지원 가능

○ (초광역권)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 사업의 효과성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광역 과제 수립 가능

○ (예산 지원) 「보조금법」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②~⑨ 내역은 출연금)

- 각 지자체는 시도별 국비 지원규모 대비 최소 20% 이상 의무매칭
- RIS 등 통합사업의 지역별·대학별 수주액 비율,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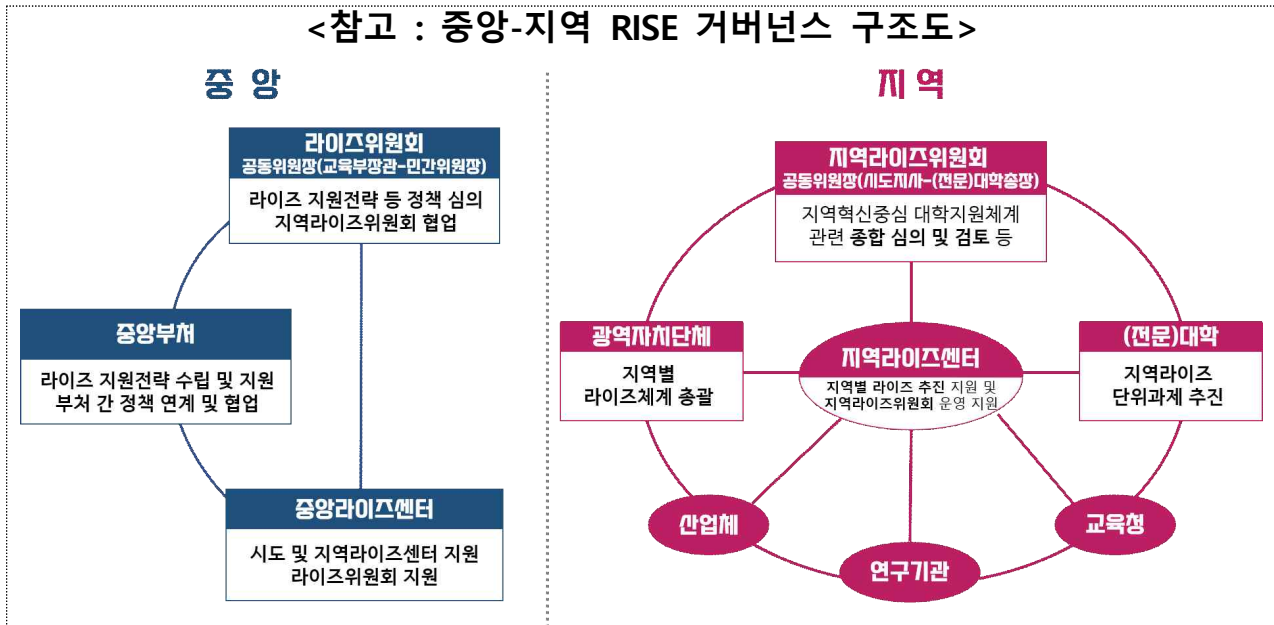
<시도별 예산배분기준>

① 대학역량 기반	② 지역역량 기반
지출 재구조화 대상 사업 참여 대학 + 수주율 + 글로벌대학 지원액	▶ 의대·늘봄 지원 ▶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우수 지자체 ▶ 시도 매칭률 및 시범지역 성과

<’25년 RISE 정부 예산 구성>

사업명	예산 (억원, '24.)	정부안 예산(억원, '25.)
세부사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20,010
내역사업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17,047
②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	2,010
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	258
④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	96
⑤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	210
⑥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	140
⑦ 마이스터대 지원	151	47
⑧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	142
⑨ 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60	60

2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구성



구분	기관	기능 및 역할
지역	지역RISE위원회	· 지역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지역 RISE센터 지정·취소 심의 등
	광역지자체	· RISE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단위과제 구성 · 지역RISE센터 운영 지원 및 제도 정비 · 지역RISE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시도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성과관리 총괄
	지역 RISE센터	· 시도 RISE 계획 수립 지원 ·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관리(공모, 지정) · 대학에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집행 관리, 성과관리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역RISE위원회 운영지원
	대학	·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제안 · RISE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수행 · 산업체, 혁신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중앙	RISE위원회	· 중앙단위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중앙 RISE센터 지정·취소 심의 등
	교육부	· RISE 지원전략 수립 ·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분 · 시도 성과관리·모니터링 등 총괄 · 규제특례 사항 검토
	중앙 RISE센터	· 광역지자체 및 지역 RISE센터 교육 · 시도 RISE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 라이즈위원회 운영 지원

계 획 수 립



- 24 -

④ **사업 운영 세부사항** ※ 예산 교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은 「보조금법」 기반 진행

① 사업의 위탁

- 시·도 지사는 지역 RISE센터에 RISE 사업예산과 사업관리 예산을 교부하고, 지역RISE센터에 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
- 지역RISE센터는 시·도가 수립한 RISE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RISE위원회가 심의·의결

② 예산 교부 방식

-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 및 중앙 정부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방식으로 지원
※ 경상보조 목에서 벗어나는 항목은 지출 불가(사업비 편성 항목 참고)

교육부	
RISE 지원전략 수립, 보조금 집행 총괄 관리 시도 대상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중앙관서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자체 성과평가 실시 등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보조사업자
지역 RISE센터	
사업비관리, 사업 공고, 선정평가 및 성과관리 사업비교부 ↓ ↑ 결과보고	간접보조사업자
대학	
사업수행	간접보조사업자

③ 사업비 편성·관리·집행

- 각 지자체는 직접적 지방비 투입 이외에도 기타 간접 지원금*도 최대한 확보하여, 대학 재정지원 규모 증가 효과 창출 도모
* RISE 예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타부처의 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 대학에 대한 기업의 투자금 등 지자체가 직접투자하는 지방비 이외 확보할 수 있는 자금
-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회계 또는 대학회계 중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각 대학 총장이 RISE 사업비를 총괄 관리

○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별표 2 : 사업비 편성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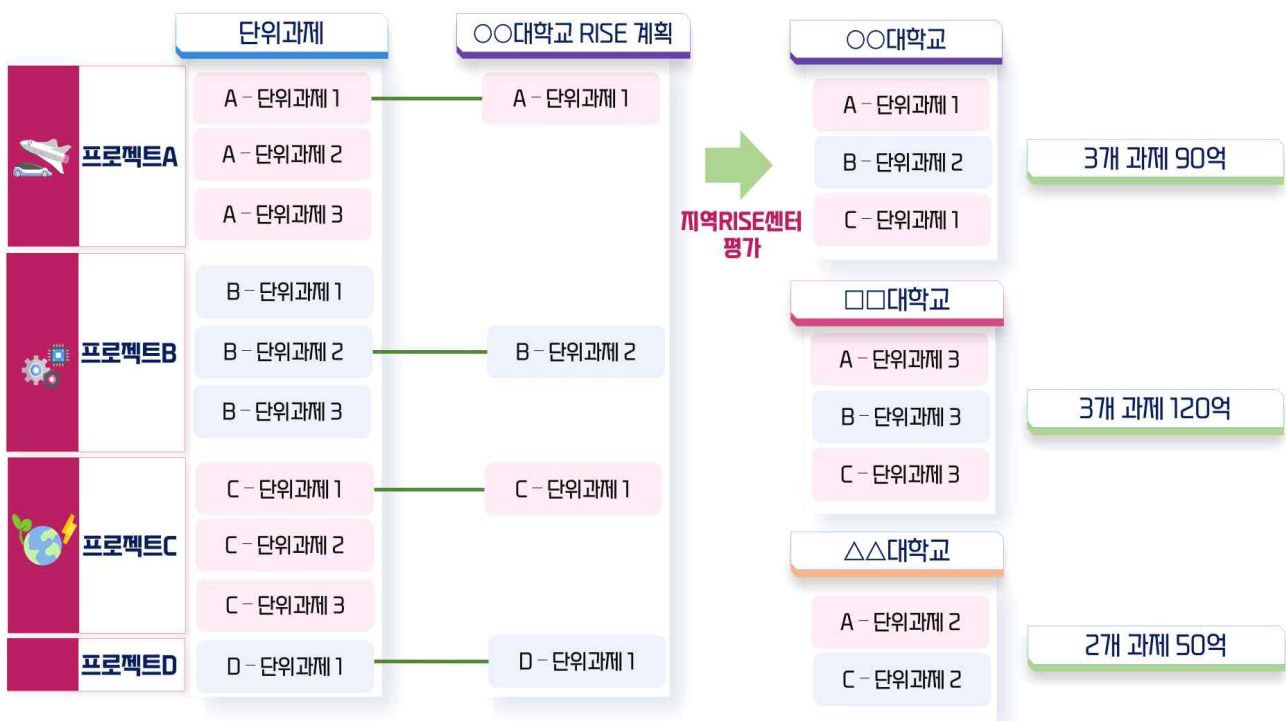
항목	사용용도
인건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원 및 직원 등 인력의 인건비 비용(퇴직금, 4대 보험료, 보직수당, 성과급 포함) 2) 그 밖에 RISE사업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장학금	1) RISE사업 관련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2) RISE사업 관련 (전문기술)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3) RISE사업 관련 그 밖에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 보조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국제화 경비: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경비,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외 교육·연구활동 관련 각종 경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1) 강의실·실험실·실습실 등 RISE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RISE사업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육·연구·산학협력 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1) 기관 간 연계·협업 활동, 지·산·학·연 정보 공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운영 등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1)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비: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2)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추진·참가비 또는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협의체 운영비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에 필요한 비용 2) 기술이전·사업화 비용: 창의적 자산 발굴 및 기획비용, 산학공동 기술·지식 사업화 비용(시제품 제작 및 검증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대학·협력기관 간 기술사업화 융·복합 프로그램 추진비, 학생 기술·지식 창업 프로젝트 비용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3) 성과 공유·확산비: 세미나·포럼 개최비, 위원회 수당 등 지·산·학·연 협력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도서 구입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신규 채용인력 공개임용 시 필요 경비 등 RISE사업 관련 교육·연구·산학협력 등의 활동 수행 시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
간접비	교육연구단, 산학협력단 등 RISE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RISE 사업비는 대학 내에서 사업과 관계 없는 인건비 또는 경상운영비로 사업 불가하며, 인건비·간접비 등 최대 사용가능 비율 등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으로 별도 안내

- 지역 RISE센터는 대학이 수주한 단위과제 예산의 총액을 대학에 교부하고, 대학은 단위과제별 칸막이 없이 예산 활용
- 대학은 지역의 RISE 계획에서 제시된 단위과제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자율성과지표는 달성 필요
- ※ 대학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RISE센터에 보고

5 사업수행 대학 선정

< 사업 수행 대학 선정 구조도(안) >



- (원칙) 지역 RISE센터는 단위과제별 공모가 아닌 '00시/도 RISE 사업' 이라는 단일사업, 패키지 형태로 공모
- 각 지역은 프로젝트·과제 특성 및 지역 여건, 학교수 등을 고려해 단독형, 대학 간 또는 기업·연구기관 등 참여 협의체(컨소시엄)형 등 설계 가능
- ※ 지역 판단으로 대학별 신청 가능 과제 수 제한 가능(통합 예정 대학은 '24년 9월 기준으로 산정)
- 사업 목적·내용 및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가 어려운 경우는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으로 추진 가능
- ※ 지정 추진 과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추진할 것을 권장

- 대학이 신청한 과제를 기초로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므로 공모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는 단위과제가 없도록 공모 방안 설계 권장

※ 누락된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재공모 또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누락된 단위과제의 내용 변경, 삭제 등 RISE기본계획 변경 가능

- **(대학의 신청)** 지역별 전체 단위과제 중 대학이 추진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 '00대학 RISE 계획'라는 단일 신청서 제출

-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들을 선택하여 신청

- **(선정절차)** 지역RISE센터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는 대학별 신청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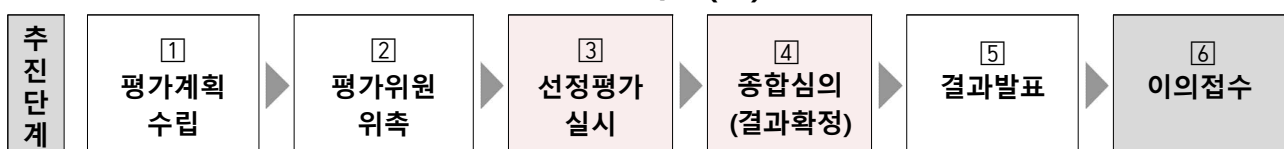
-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지역RISE위원회에 상정하고, 지역RISE위원회는 필요 시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평가 결과 심의·의결
- 평가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 등을 유지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

- 지역RISE센터는 평가위원 구성 시, 위원의 절반 이상을 중앙 RISE센터가 제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들의 활용 필수

- RISE로 통합되는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종합평가, 연차평가 등)를 대학 공모 심사 시 반영* 권장

* RIS·LINC 등 RISE 통합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E의 성과목표와 연결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과제에 대한 대학의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

<선정절차도(안)>



※ 공모·선정절차별 상세 내용은 선정평가 매뉴얼을 통해 별도 안내

4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운영

1 성과관리 구조

◆ 지자체의 자체평가(지자체→대학)를 기본으로 하고, 교육부는 연차점검 및 중간·종합평가를 통해 지역별 성과 점검 및 환류(예산·컨설팅) 실시

< RISE 성과관리체계도 >

평가흐름	분류	사업수행 연도					평가 내용	평가 방식
		1년	2년	3년	4년	5년		
자체 평가 지자체 (지역RISE센터) → 대학	자체 평가	○	○	○	○	○	· (목적) 대학별 단위과제 진행상황 점검 · (지표) 자율성과지표	자율
사·도 대상 점검·평가 교육부 → 지자체	연차 점검	○		○	○		· (목적)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지표)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추진 적절성	정량 + 정성
	중간· 종합 평가		중 간			중 합	· (목적) 지역별 성과 점검 · (지표) 자율성과지표 달성도 및 공통성과지표 성장률, 지역별 RISE 추진과정	

*각 평가는 해당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실시(예: 중간평가는 2차년도 종료 후 실시)

- **(자체평가)** 지역에서 설정한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지역 및 대학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및 환류
- **(평가 주체)**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RISE센터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방법)** 지역별 평가 계획에 따라 연차평가 외 중간·종합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 방법(정성·정량), 환류 방안(예산 배분 등) 등을 결정하여 추진
- **(지표)** 지역에서 자체 설정한 자율성과지표
- **(시기)** 매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

※ 평가 일정(매년) : 사업 종료(2월) → 성과평가 실시(3~5월) → 상위 점검·평가(6~8월)

- (시도 점검·평가) 지역별 자율성과지표를 바탕으로 RISE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공통성과지표를 통해 지역별 성과 확인
- (평가 주체) 교육부(중앙RISE센터)는 지역·대학 전문가로 별도의 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방법) 연차점검은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중간·종합평가 시에는 서면·대면평가 병행,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배분 등 환류
 - ※ 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배분 방식은 별도 계획을 통해 안내하되,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정도는 연차점검 < 중간평가 < 종합평가 순으로 증가
- (지표) 지역별 자율성과지표 달성도와 자체평가 적절성을 매년 점검하고 중간·종합평가시에는 공통성과지표 및 RISE 추진과정 평가도 실시

< 평가지표 구성(안) >

지표 분류	지표명	
공통 성과지표(안)	①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 경제 영향력 증가율
RISE 추진과정 평가항목(안)	① 예산 확보·집행 등 사업 운영, 성과관리의 적절성	
	② 거버넌스 구축·운영의 적절성	

- (시기) 매년* 지역별 자체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시

※ 평가 일정 : 사업 종료(2월) → 자체평가 실시(3~5월) → 연차점검 실시(6~8월)

* 단,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2년차, 5년차 연차점검은 중간·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

< 연차·중간·종합평가 시기>

연차	사업기간	연차점검	중간·종합평가	환류 방안
1차년도	'25.3월 ~ '26.2월	(연차)'26.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2차년도	'26.3월 ~ '27.2월	중간평가에 통합	(중간) '27.6~8월	차년도 예산반영
3차년도	'27.3월 ~ '28.2월	(연차)'28.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4차년도	'28.3월 ~ '29.2월	(연차)'29.6~8월	-	차년도 예산반영
5차년도	'29.3월 ~ '30.2월	종합평가에 통합	(종합) '29.12월	2주기 RISE 반영

2 성과지표(공통·자율) 구성

◆ **지역**은 지역RISE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교육부**는 지역의 중장기 성과를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공통의 **공통성과지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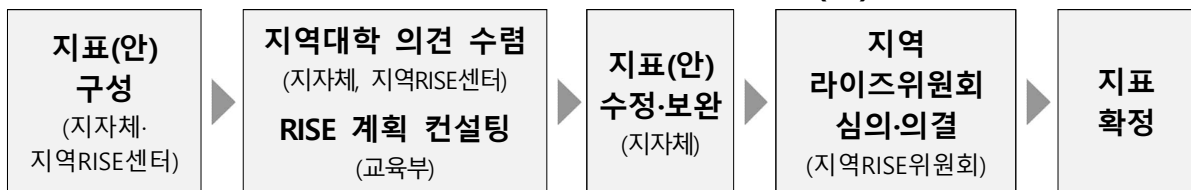
- **(자율성과지표)**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관리하는 성과지표로 지역RISE의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가 자체 개발한 지표 활용
- **(구성)** 단위과제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수행과정, 사업결과 및 효과에 대해 자체 점검(모니터링, 평가)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

< RISE 자율 성과지표 구성(예시) >

	프로젝트	단위과제	자율성과지표
A 지역 RISE 계획	프로젝트 '가'	과제 1	창업교과 이수학생 비율
			대학생 창업 건수
		과제 2	대학창업기업 판로 지원액
			대학생 창업 건수
	...	...	...

- **(선정절차)** 지역별 RISE 계획 수립 시, 시도와 대학이 함께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로 **자율성과지표** 확정
- ※ 대학 측의 평가 부담 완화 및 평가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급적 대학 정보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RISE 자율 성과지표 선정 절차(안) >



※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성과지표·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지역RISE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지표 선정기준)** 사업의 우선순위, 내용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 발전시킬 지역의 고등교육 분야**의 지표를 선택하며 **지표별 지역 내 과거 추세치·전년도 실적·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발전된 목표치 설정
- ※ 기준값은 전년도 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 등 합리성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매년 증가(우상향)하는 수치로 산정

- **(공통성과지표)** 교육부가 제시하는 정의·산식에 따라 모든 시도가 공통으로 RISE 취지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

공통성과지표 구성(안)	
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IMPACT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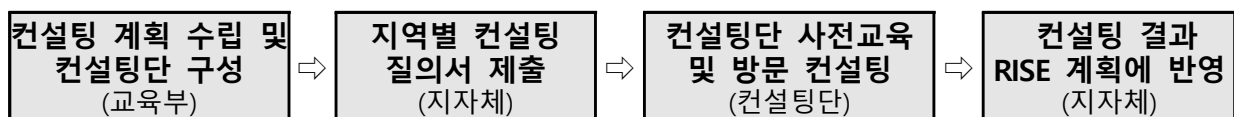
※ 공통성과지표 세부 산식 등은 2025년 상반기 중 별도 안내 예정

- **(구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표과제의 성과지표(①)와, RISE의 비전·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지역 공통의 결과지표(②~⑥)로 구성
 - **(평가방법)** 각 지역별 교육·경제적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공통 지표(②~⑥)는 기준연도 대비 증가율, 대표과제지표(①)는 달성률 평가
 - **(평가활용)** 공통성과지표는 중간·종합평가시에만 평가지표로 활용
- ※ ④~⑥ 공통성과지표는 종합평가시에만 활용

- **(RISE 추진과정 평가)** 중간·종합평가 시 지자체-대학 간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예산 확보·집행 등 추진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 실시

③ 지역 RISE 계획 컨설팅

- **(추진 목적)** 시도별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RISE 계획 및 시행체계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실시(필요시)
- **(추진 시기)** : 상위 점검·평가(연차·중간·종합) 결과 안내 후 9~12월 중
- **(추진 절차)** : ① 컨설팅단 구성 → ② 지역별 컨설팅 질의서 제출 → ③ 컨설팅단 사전 회의 → ④ 지역별 방문 컨설팅



- **(컨설팅 내용)** RISE 추진목표 및 프로젝트별 중점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세부 추진내용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자문

IV. 향후 추진 일정(안)

□ 지역별 RISE 수행대학 공모 및 사업 추진 ('25.1분기.~)

※ 지역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역별 사업수행 대학 공모 및 선정 → 대학별 사업 개시

□ 지역별 자체평가 등 사업 평가 및 환류 ('26.~)

붙임

공통성과지표 (①~③) 정의 및 산출식

1 중간·종합평가 RISE 공통성과지표별 가중치(안)

구분	공통성과지표(안)		지표별 가중치(안)	
			중간평가	종합평가
종합평가	중간평가	①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	0.5	0.25
		②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0.25	0.15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0.25	0.15
		성인학습자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실적		
		중간평가 가중치 합	1.0	0.55
	종합평가	④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	0.15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0.15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IMPACT 평가)		0.15
		종합평가 가중치 합		0.45

※ 중간평가(27년), 종합평가(29년) 공통성과지표는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함

2 중간평가 공통성과지표 정의서 및 측정방식(안)

< 공통성과지표 설계 및 성과관리 기본 방향 >

- 전체 성과관리 체계 중 교육부 공통성과지표에 따른 환류 비율 최소화
(①지자체 자율성과지표, ②교육부 공통성과지표 및 ③정성지표에 대한 환류 비율 별도 안내)
- 투입예산 규모를 고려한 측정 산식과 증가율 중심 평가로 평가의 합리성 도모
- 원칙적으로 공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RISE센터/대학의 평가 부담 최소화
- 대학 직접 입력지표의 경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 3중 검증체계 도입
(대학 1차 사전 검증 후 제출 → 지역RISE 2차 사전 검증 후 제출 → 외부 전문가 3차 사후 검증)

(1) 지역별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합계 : 중간평가 50점)

지표정의	지역별로 제시한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한다.
조사대상	RISE 참여지역 전체
측정 산식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A) = “대표과제의 적절성(B) × 목표 달성률(C) × 가중치(D)”의 합 대표과제의 적절성(B) : 별도 정성평가*를 통해 대표과제 선정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점수를 대표과제별로 부여(3등급 평가/ 우수(100점), 보통(90점), 미흡(80점)으로 구분) * 대표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기술의 수준, 대표과제와 기존 사업(중앙부처, 시·도) 간 차별성, 목표의 도전적 설정 여부 등 목표 달성률(C) : 성과지표의 달성값/목표값으로 하며, 달성률 1.0 이상은 1.0, 달성률 0.8 미만은 0.8로 계산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가중치(D) : 대표과제 수를 고려하여 필수 대표과제와 그 외 대표과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되, 필수 대표과제의 가중치가 1.5배 이상이어야 함 ※ (예시) 대표과제 2건 : 필수(0.6), 그 외(0.4) / 필수(0.5), 필수(0.5) 대표과제 3건 : 필수(0.5), 그 외(0.25), 그 외(0.25) / 필수(0.4), 필수(0.4), 그 외(0.2)
	※ 필수 대표과제란 1차년도 종료 시점의 RISE 기본계획 내 대표(시그니처)과제를 의미하며, 필수 대표과제를 포함한 3개 이내의 대표과제 및 성과지표(과제별 1개) 제시
득점 산출식	득점 = 대표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A) × 지표별 가중치(0.5)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참고사항	지자체 직접 제출 자료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득점산출 및 사후 검증 가능

(2)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합계 : 중간평가 25점)

지표정의	창업,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성과 등 지산학연 협업 성과를 측정한다.
조사대상	RISE 참여지역 전체
측정 산식	지산학연 협업 실적 증가율 = ㉓ × 0.5 + ㉔ × 0.5 ㉓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 및 매출액 증가율 ㉔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실적 증가율 ㉓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 및 매출액 증가율 = ㉓-1 대학발 창업기업 수 증가율 × 0.7 + ㉓-2 대학발 창업기업 매출액의 증가율 × 0.3 ㉓-1 대학발 창업기업 수 증가율 = $(A-B)/B \times 100$ (A) 비교연도 당해지역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비교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B) 기준연도 당해지역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비교연도 창업 기업은 A에 포함하며, 기준연도 창업기업이 비교연도 유지 시 A 및 B에 포함하고, 기준연도 창업기업이 비교연도 부도·폐업으로 인한 미유지 시 B에만 포함 ※ RISE예산은 억원 기준이며, ㉓-1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㉓-2 대학발 창업기업 매출액의 증가율 = $(C-D)/D \times 100$ (C) 비교연도 당해지역 학생·교원 창업기업 연간 매출액 합계/비교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D) 기준연도 당해지역 학생·교원 창업기업 연간 매출액 합계/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비교연도 창업기업의 비교연도 매출액은 C에 포함하며, 기준연도 창업기업의 비교연도 및 기준연도 매출액은 C 및 D에 포함하고, 기준연도 창업기업의 당해연도 부도·폐업으로 인한 미유지 시 D에만 포함 ※ 매출액 및 RISE예산은 억원 기준이며, ㉓-2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㉔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실적 증가율 = ㉔-1 지재산·논문 실적 증가율 × 0.5 + ㉔-2 건당 기술이전 실적 증가율 × 0.5

	㉔-1 지재권·논문 실적 증가율 = (A-B)/B × 100 (A) (비교연도 지재권 건수 × 0.7 + 비교연도 논문 건수 × 0.3)/비교연도 RISE총예산 (B) (기준연도 지재권 건수 × 0.7 + 기준연도 논문 건수 × 0.3)/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지재권은 특허출원, 국내·외 특허등록, 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건수 ※ 지재권 출원 및 등록이 각각 이루어진 연도 실적을 중복으로 인정 (사례1 26년 출원,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26년도 실적 2건) (사례2 26년 출원, 27년 등록인 경우 26년도 실적 1건, 27년도 실적 1건) ※ 논문은 사사표기, 저자표기, 연구협약서, 계약서 등을 통해 기업 또는 외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의미하며, SCI, SSCI, A&HCI, SCOPUS, KCI (우수)등재/등재후보지까지 인정 ※ RISE예산은 역원 기준이며, ㉔-1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㉔-2 건당 기술이전 실적 증가율 = (C-D)/D × 100 (C) 비교연도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수익(백만원) / 비교연도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 건수(건) (D) 기준연도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수익(백만원) / 기준연도 지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이전 건수(건) ※ ㉔-2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특점 산출식	특점 = (㉔ 특점 × 0.5 + ㉔ 특점 × 0.5) × 지표별 가중치(0.25)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㉔ 및 ㉔ 특점 산출방식 > <table><tr><th>증가율</th><th>10%이상</th><th>10%미만~ 8%이상</th><th>8%미만~ 6%이상</th><th>6%미만~ 4%이상</th><th>4%미만~ 2%이상</th><th>2%미만</th></tr><tr><td>특점</td><td>100점</td><td>99점</td><td>98점</td><td>97점</td><td>96점</td><td>95점</td></tr></table>	증가율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특점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95점
증가율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특점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95점									
참고사항	(창업, 지재권, 기술이전) 해당연도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태조사를 활용,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특점산출 및 사후 검증 가능 (논문) 대학 내부 1차 검증 데이터에 대한 지역RISE센터 2차 검증 후,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특점산출 및 사후 검증 가능 ※ 기준연도는 25년 3월 1일 ~ 2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 비교연도는 중간평가 : 26년 3월 1일 ~ 27년 2월 28일, 종합평가 : 29년 3월 1일 ~ 30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3)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합계 : 중간평가 25점)															
지표정의	지역 고등교육기관 내 성인학습자 증가율과 인적자원 개발 성과를 측정한다.														
조사대상	RISE 참여지역 전체														
측정 산식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 ㉔ × 0.5 + ㉔ × 0.5 ㉔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 증가율 ㉔ 성인학습자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실적 증가율 ※ 성인학습자는 입학연령이 전문대 만 25세 이상, 그 외 고등교육기관은 만 30세 이상인 자														

	㉓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 증가율(단위 %) = (A-B)/B × 100 (A) 비교연도 고등교육기관 재적자 중 성인학습자 비중 / 비교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B) 기준연도 고등교육기관 재적자 중 성인학습자 비중 / 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RISE예산은 억원 기준이며, ㉓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㉔ 성인학습자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실적 증가율(단위 %) = ㉔-1 성인학습자 취·창업률 × 0.5 + ㉔-2 성인학습자 유지취업률 증가율 × 0.5 ㉔-1 성인학습자 취·창업률 증가율 = (C-F)/F × 100 (C) 비교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졸업자) 취창업률 / 비교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D/E) × 100 / 비교연도 RISE 총예산 (D) 비교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졸업자) 중 취창업자 수 (E) 비교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졸업자) 수 (F) 기준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 취·창업률 / 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G/H) × 100 / 기준연도 RISE 총예산 (G) 기준연도 대학 성인학습자(졸업자) 중 취창업자 수 (H) 기준연도 대학 성인학습자(졸업자) 수 ※ RISE예산은 억원 기준이며, ㉔-1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㉔-2 유지취업률 증가율 = (I-J)/J × 100 (I) 비교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졸업자)의 유지취업률(11개월) / 비교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J) 기준연도 고등교육기관 성인학습자(졸업자)의 유지취업률(11개월) / 기준연도 RISE예산 총 집행액 ※ 유지취업률 : 금년 2월(작년 8월 졸업자 포함) 졸업자가 금년 12월 31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11개월 후에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 ※ RISE예산은 억원 기준이며, ㉔-2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산출식	득점 = (㉓ 득점 × 0.5 + ㉔ 득점 × 0.5) × 지표별 가중치(0.25)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㉓ 및 ㉔ 득점 산출방식 > <table><tr><th>증가율</th><th>10%이상</th><th>10%미만~8%이상</th><th>8%미만~6%이상</th><th>6%미만~4%이상</th><th>4%미만~2%이상</th><th>2%미만</th></tr><tr><td>득점</td><td>100점</td><td>99점</td><td>98점</td><td>97점</td><td>96점</td><td>95점</td></tr></table>	증가율	10%이상	10%미만~8%이상	8%미만~6%이상	6%미만~4%이상	4%미만~2%이상	2%미만	득점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95점
증가율	10%이상	10%미만~8%이상	8%미만~6%이상	6%미만~4%이상	4%미만~2%이상	2%미만									
득점	100점	99점	98점	97점	96점	95점									
참고사항	해당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를 활용,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득점산출 및 사후 검증 가능 ※ 기준연도는 24년 3월 1일 ~ 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 비교연도는 중간평가 : 25년 3월 1일 ~ 26년 2월 28일, 종합평가 : 28년 3월 1일 ~ 29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함														